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548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접수 제146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① 2017. 6. 8. 신용보증원금을 127,5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8. 6. 7.(이후 2021. 6. 4.로 연장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7. 11. 24. 신용보증원금을 85,000,000원(이후 76,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한을 2018. 11. 23.(이후 2021. 11. 19.으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7. 11. 24. 신용보증원금을 85,000,000원(이후 76,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한을 2018. 11. 23.(이후 2021. 11. 19.으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합계 280,5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21. 4. 19.경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7. 16.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84,625,935원(= 원금 280,500,000원 + 이자 4,125,935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지급금 잔액은 1,028,783원, 위약금은 229,150원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는 2021. 1. 23.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21. 1. 27. B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2021. 4. 5.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21. 4.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46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21. 4. 19.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제로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B의 부탁을 받고 2021. 1.경 B에게 실제로 5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뒤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위 2006다57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21. 1. 27.경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행위도 사해행위가 되는 이상, 피고가 실제로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선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와 B이 2021. 1. 23.경 작성한 차용증(을 제2호증)과 그 촉탁에 따라 2021. 1. 26.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을 제4호증)에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2021. 4. 5.에야 체결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충주시 대 199㎡
2. 충청북도 충주시 대 2618㎡
3. 충청북도 충주시 호
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40㎡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26㎡
4. 충청북도 충주시 동
위 지상
시멘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2㎡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35㎡
시멘블럭조 스테트지붕 단층축사 84㎡
부속건물
시멘블럭조 스테트지붕 단층창고 39㎡
시멘블럭조 스테트지붕 단층축사 18㎡
5. 충청북도 충주시 동
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65㎡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25㎡
부속건물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건조실 10㎡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창고 12㎡
6. 충청북도 충주시 입야 28730㎡
7. 충청북도 충주시 입야 17851㎡
8. 충청북도 충주시 전 2116㎡
- 지분 3분의 1-

